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6월 2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)

배포일시	2019. 6. 20. (목)	담당부서	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한상덕 과장(044-203-5860) 양원창 과장(044-203-4402) 정병락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조현진 사무관(044-203-5863) 심상수 사무관(044-203-5874) 나한균 사무관(044-203-5882)

무역위원회, 제389차 회의 개최

-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최종 판정,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
-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'19.6.20.(목) 제389차 회의를 개최하여, **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*에 5년간 13.51~36.98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**하기로 결정하였다. 아울러 **'후르츠 래빗'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**한 물품을 수입·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 2곳에 대하여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**하였다.

*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olyethylene Terephthalate, PET) 필름 : 강인성, 유연성, 낮은 흡습성 및 기체 투과성, 내약품성, 탁월한 절연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, 높은 치수성, 다양한 규격 및 두께로 제조가 가능해 산업용(열차단 필름, 접착테이프), 포장용(스낵, 용기), 전기전자(LCD, 편광판, 태양광) 등 그 용도가 다양함

□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*를 부과중인 **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**하고,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.

* 2차 재심조치 내용 :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7.42~12.92%의 덤핑방지관세부과 ('16.1.13.~'19.1.12.)

○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은 첫째, ①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증가와 ②재심사대상물품의 저가판매 및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및 인상억제 효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, 매출액, 영업이익율, 고용 및 임금 등 **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가 악화**되고 있고, 둘째, 중국 등 **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**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덤핑으로 인한 **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.**

-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**우수한 특성**(내열성, 내한성, 절연성, 투명도 등)으로 인하여 식품포장용, 전자재료(광학)용 소재 등 **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**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서,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.

- 국내시장규모는 **'17년 기준 약 8천억 원대 수준**(약 30만 톤대 수준)이고 중국 및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%대 수준이다.

○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('18.9.12)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.

□ 또한 무역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**'후르츠 래빗'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**한 물품을 수입·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기업 2곳에 대하여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**하였다.

○ 저작권자는 본인이 창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한 '과일토끼 젤펜'을 중국으로부터 수입·판매한 혐의가 있는 'A'사와 'B'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(접수 : 2019.6.7.)하였다.

○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,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, 수입된 물품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.

○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**될 예정이며, 양 당사자 서면조사, 기술 설명회,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.

【붙임】 1.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종료재심사 개요

2.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현진 사무관(☎044-203-5864), 심상수 사무관(☎044-203-5874), 나한균 사무관(☎044-203-58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종료 재심사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(요청일) : 코오롱인더스트리㈜, ㈜효성화학, ㈜화승케미칼, 에쓰케이씨㈜ ('18.7.11.)

○ 피요청인 : (중국) 푸웨이 등 8개사, (인도) 가웨어 등 2개사

○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olyethylene Terephthalate, PET) 필름으로 증착여부 불문

 * 제외물품 : ①두께 9㎛ 미만의 증착되지 않은 PET필름, ②비냉매용 모터 절연용(絶緣用)으로 두께 125㎛ 이상인 흰색 PET필름, ③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두께 125㎛ 이상인 흰색 PET필름, ④홀로그램 PET필름, ⑤두께 300㎛ 이상인 유채색 PET필름

- 용도 : 산업용(열차단 필름, 접착테이프 등), 포장용(스낵, 라면 등), 광학용(LCD, 편광판 등), 그래픽용(레이저프린터 인쇄용지 등)

- HSK 분류 : 3920.62.0000, 3920.69.0000

□ 국내시장규모('17년) : 약 8천억 원대 수준 / 약 30만 톤대 수준

* 시장점유율(물량) : 국내산 약 70%대 미만, 중국 및 인도 약 10%대 수준, 기타 20%대 수준

□ 그간 덤핑방지조치 내용

구분	덤핑방지 관세기간	덤핑율(%)	산업피해 구제수준(%)	덤핑방지관세 부과율(%)
원심	'08.10.27. ~ '11.10.26.(3년)	5.67~36.98	25.32	5.67~25.32
1차 재심	'12.5.25. ~ '15.5.24.(3년)	5.87~36.98	25.32	5.87~25.32
2차 재심	'16.1.13. ~ '19.1.12.(3년)	7.42~36.98	12.92	7.42~12.92

□ 조사 경과

○ '18. 9월 조사개시, '19. 3월~5월 국내외 현지 실사

○ '19. 4월 공청회, '19. 6월 최종판정

붙임 2 **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**

□ 조사신청 개요

○ (신청인) 조윤희(씨알존 대표), 김재신(저작권자)

○ (피신청인) 국내기업 A사 및 B(개인사업자)

○ (신청이유)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중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유통

○ 저작권 및 조사대상 물품

신청인측 저작권(저작자 : 김재신)	조사대상물품
후르츠 래빗 캐릭터	과일토끼 젤펜
	

□ 향후 계획

○ 양 당사자 서면조사 및 기술 설명회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
- 침해 판정시 수입·판매 중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